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7일, 김승수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8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1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승수의원)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1.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 근거 마련

개정안은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5년마다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

제20조(낙시행위의 제한) ①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20조(낙시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후 5년마다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지

② · ③ (생 략) 제82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 6. (생 략) ④ (생 략)	정 재검토 방법, 지정 · 해제 ·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5항----- ----- ----- 3.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20조제1항¹⁾), 지정된 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2조제2항²⁾·제3항³⁾).

-
- 1)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 3)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이에 따라 2023년 12월 기준 낚시 금지구역은 대구 수성호, 경기 반월호 등 141개소, 낚시 제한구역은 충남 청천지 등 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참고자료 1·2 참조).

그러나 현행법에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 근거 외 변경·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상황으로, 구역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및 국민의 수변 접근권·이용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5년마다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려는 것으로,

지정된 구역의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구역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